

수원지방법원 2020. 12. 24 선고 2019나8959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12. 24 선고 2019나89593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10. 30 선고 2019가단512 판결

## 전문

**원고, 항소인A**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용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민옥, 고은애, 김새별

**피고, 피항소인B**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진

담당변호사 김영모

**변론 종결** 2020. 11. 12.

**판결 선고** 2020. 12. 24.

**제1심판결**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10. 30. 선고 2019가단512 판결

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6. 1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.

○ 제1심판결 제4쪽 제3,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5,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[수표와 '생택 3건, B(원고) 사장님,  $5,500 \times 3 = 16,500$ , 2017. 6. 14.'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함께 촬영한 사진]을 제출하였으나, 갑 제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㉠ 원고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므로,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E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생활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하였거나, 그 과정에서 갑 제3호증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, ㉡ 피고 또한 F를 통하여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이 사건 생활용지 수분양권을 매도하는 내용의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을 뿐,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생활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, ㉢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그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'H'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생활용지 수분양권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도

어렵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내지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5,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거나, 피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(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생활용지 수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해당 금원은 당초 이 사건 생활용지 수분양권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던 매도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).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.』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이동식**

**판사조서영**

**판사신유리**